2016년도 남양주소방서 종합감사 결과

I 감사개요

○ 감사기간 : 2016. 10. 10.~ 10. 18.(7일간)

○ 감사분야 : 2013년 10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

O 감사결과

| 감사결과 | | | 처 분 계 획 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|----|----|---------|-------|--|
| | | | 행정상(건) | | 신분상(명) | | | 재정상(천원) | | |
| 행정상 | 신분상 | 재정상 | 시정 | 주의 | 징계 | 경고 | 주의 | 회수 | 과태료 | |
| 17건 | 16건(43명) | 3건(1,100천원) | 5 | 12 | 2 | 10 | 31 | - | 1,100 | |

주요 지적사항

○ (인사·행정) 직무분야 가점자격증 적용 부적정

- 소형선박조종 면허의 경우 적용제한이 "None(제한없음)"으로 기재된 것만 가점을 부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, 지방소방장 김☆☆외 3명이 취득한 "동력레저기구조종면허"는 자격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2014년 상반기 가점평정 시 각각 0.2점의 자격가점을 부여하였고.
- 2013년 하반기 가점평정 시 지방소방장 이★★은 현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없음에도 가점평정표에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, 0.5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부여.
- ❖【관련규정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(가점평정)
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규정 제4조(자격증 가점평정)

○ (예산·회계) 청사 중축공사 설계용역비 과다 산출로 예산 낭비

- (공사비 산출)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가능한 예산은 507,142천원 임에도, 총 예산 538,960천원에 대하여 설계비 요율(5.67%)을 적용함에 따라 설계용역비 1,649,710원이 과하게 산출되었으며,
- (보험료 산출)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용역은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용역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보험료 348.700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.
- ◆【관련규정】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8조(대가산출의 원칙 및 제16조(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)
 설계·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2조(적용범위)

○ (재난대응 안전) 자동제세동기 일일점검 미실시

- 재난대응과-10333호(2013.06.11.) 「구급품질개선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기록지 작성 지침」에 의하면 운영중인 자동제세동기는 일일점검표에 의거 매 교대점검시 작성 ·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, 남양주소방서 별내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○○○ 등 9명은 교대점검을 하면서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제세동기의 일일 점검 총 527회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.
- ◆【관련규정】 소방장비관리 규칙 제26조(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)구급품질 개선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기록지 작성지침(2013년 지침)

○ (예방·민원)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정

-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·시설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안전시설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으나,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하여야 함에도, 대표자가 변경되어 재발급 요청을 한 A고시원에 대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누락하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함
 - ❖【관련규정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)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(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)

수범사례 1 민관 동행 기부나눔 운동 추진

□ 추진개요

- O 국제적인 기부나눔 참여를 통한 진정한 소방봉사 의미 재인식 기회마련
- 민·관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협업추진으로 소방안전 부분에서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

□ 추진사항

- 시 책 명 : 소방나눔 수출 프로젝트 1탄!
- O 참여대상 :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, 소방안전협의회 위원 등
- O 참여방법 : 생활물품(헌옷, 헌 신발, 학용품 등) 기부
- 추진기간 : 2016. 08. 15. ~ 10. 28.



- ※ 기부물품 이송 : 소방서 ⇨ 경기 광주 : 컨테이너 선적
- 기부수량 : 생활물품 278박스
 - * 배, 사과박스 기준
- O 기부나라(대상) : **필리핀(다바오시)** ⇒ 선박운송 후 현지전달

□ 기대효과

- 기부 나눔 참여를 통한 의용소방대원의 '소방가족'이라는 공동체 재인식 기회마련
- O 함께라서 더 행복한 따뜻한 마음 전파 및 효율적인 나눔 문화 확산에 시너지 효과 기대

수범사례 2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

□ 추진개요

-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市 예산지원 근거마련
- 의용소방대의 각종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재난활동 대응능력을 강화

□ 추진경과

- **2016.07.19.(화)** : 남양주소방서장이 방호구조팀장에게 市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市 조례(안)을 만들 것을 지시
- 2016.08.01.(월): 방호구조팀장이 조례제정(안)을 만들어 서장의 검토→ 市 의회사무처에 초안 제출(검토 의뢰)
- 2016.09.09.(금) : 남양주시의회의 등 10명의 시의원들의 공동 발의 →
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
 (안)이 본회의 통과
- **2016.09.29.(목)** : "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" 시행 공포

※ 2016. 의용소방대 市 보조금 지원내역

| 계 |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비 | 도지사 기술경연비 | 긴급출동 차량유지비 | 화재진압 지원차량 | 기타 지원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
| 51,900 | 10,400 | 7,000 | 3,500 | 25,000 (1대) | 6,000 | |

(단위 : 천원)

□ 기대효과

○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 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